

	<h2 style="margin: 0;">총동창회 회칙</h2>		규정번호	7-0-1
			제정일자	1982.12.11
			개정일자	2012.04.30
			개정번호	Ver.3 총페이지 6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회는 동양미래대학교 총동창회(이하 “본회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회는 산하 각 학과별 총동문회와 상호 호혜의 정신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본회는 모교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시내 요지에 설치할 수 있다.

제 2 장 회 원

제4조(회원) 회원의 구분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정회원 : 모교의 각 학과(부) 졸업생으로서 각 학과(부)의 총동문회 회원.
2. 준회원 : 모교의 각 학과(부) 재학생.
3. 명예회원 : 학교법인 설립자, 이사, 감사 및 역대 총장.
4. 특별회원 : 모교의 현직 교직원 또는 전직 교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.

제5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정회원은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

② 준회원은 발언권, 입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

③ 명예회원,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6조(임원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1. 고 문 : ○ 명
2. 자문위원 : ○○명
3. 회 장 : 1 인
4. 부 회 장 : 수석부회장1인, 부회장 ○명, 당연직 부회장
5. 정/부국장
6. 이 사 : ○○명
7. 감 사 : 수석감사1인 , 감사 1인
8. 특별위원회장

제7조(임원 및 감사 선출) ① 고문 : 본회의 역대 회장이나 모교 전임 총장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
② 자문위원 : 역대 총동창회 및 총동문회의 임원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
③ 회장 및 감사 : 이사회에서 선출 후 총회에서 인준한다.

④ 수석부회장 : 부회장중 회장이 선임한다

⑤ 부 회 장 : 회장 임명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.

⑥ 당연직 부회장 : 각과(학)의 총동문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.

⑦ 정/부국장 : 회장이 임명한다. 단, 총무부국장은 당해 연도 졸업한 총학생회 회장으로 한다.

⑧ 이사 : 각 과의 총동문회의 임원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여금 추천받아 임명한다.

제8조 (임원 및 감사 임기) 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특별위원회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회장이 정한다.

제9조(임원 및 감사 임무) 본 회의 임원 및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장 :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2.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유고시 본 회를 대표하며 부서업무를 총괄한다.

3. 이 사 : 회칙에서 정한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.

4.정/부 국장 : 지정된 부서업무를 수행하고 수행결과는 회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.

5. 특별위원회장 : 회장이 지정하는 특별업무를 수행하고 수행결과는 회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10조(총회)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하며 대의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당연직 대의원 : 본회 임원

2. 기별대의원 : 각과의 총동문회장이 각기수별로 선임하며 체동문수의 2%를 넘지 않는다.

3. 위촉대의원 :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 단, 당연직 대의원의 10%를 넘지 않는다.
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
1. 정기총회 : 매년 12월중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 1주일 전까지 통보 및 일간지에 게재한다.

2. 임시총회 : 회장이 필요시 소집 또는 대의원 1/3이상 요구시 회장이 소집하고 통보방법은 정기 총회에 준한다.

제11조(총회 의결) ①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장 및 감사 안준
2. 회칙 개정
3. 예산결산
4. 사업계획
5. 회비에 관한 사항
6. 임원회 및 회장단 위임사항
7. 기타 중요사항

② 총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.

③ 임원회 및 회장단 위임사항

회장단의 구성은 회장, 부회장, 정/부국장, 특별위원회장으로 한다.

2. 회장단 위임사항

가. 국별 편성, 임명에 관한 제반업무

나. 특별위원회 제반업무

다. 기타 필요사항

제12조(이사회) ① 이사회의장은 본회 회장이 되며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대리한다.

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거나 이사회 1/3이상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3조(이사회 의결) ①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장 및 감사후보 추천
2.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인준
3. 총회에 제출할 중요사항
4. 회비 사정에 관한 사항
5. 회장단 위임사항
6. 기타 중요사항

② 이사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.

③ 회장단 위임사항

1. 임원의 보선
2. 임원의 해임
3. 기타 필요사항

제14조(감사) ① 수석감사는 감사업무를 총괄하며 별도 내규에 따라 기록,보관한다.

② 감사는 본회의 전반적인 재무회계를 상.하반기에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총회에서 보고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 1/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특별감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5조(특별회 회칙) ① 회장은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 활동은 이사회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활동결과는 회장과 총회에 직접 보고한다.

④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회장은 필요시 추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1. 총회준비위원회
2. 회칙개정위원회
3. 징계위원회
4. 발간물편집위원회
5. 체육육성위원회
6. 기타위원회

제16조(조직) ① 회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편성 운영하며 업무에 따라 추가 편성 할 수 있다.

1. 사업국 : 기금 확보, 홍보, 수익사업, 장학생선발 등
2. 조직국 : 회원 확보, 조직 확대 및 유지관리 등
3. 여성국 : 여성회원에 대한 사업국 및 조직국업무
4. 총무국 : 본회 운영, 재무회계, 각국업무지원 등

② 각 국장 및 부국장은 소관 업무계획, 진행, 결과에 대한 회장 및 부회장의 승인을 득하거나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사무관리) ① 각국장 및 부국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 관습을 기준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② 수행업무의 별도 기준을 요하는 업무는 해당 규정을 수립, 회장 및 부회장의 승인을 득한후 수행한다.

③ 각 국장 및 부국장은 수행업무에 대한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며 당해 기록 관리는 회장 및 부회장의 결재 또는 승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4 장 재 원

제18조(재원) ① 본회의 재원은 회비, 기부금, 사회수익금, 입회금 등 으로 한다.

* 입회금 : 졸업학년에 모교에 납부 *

② 회장은 필요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19조(재원관리) ① 확보, 재원은 총무국에서 관리, 집행한다.

② 회비, 기부금, 입회금은 이사회 의결로 처리한다.

제20조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 까지 로 한다

제21조(총동창회 장학생 선정기준) ① 재학생중 타의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경제적

여건이 어렵고 학과 성적이 상위 10%이내인 자.

② 총동창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.

제22조(장학생 선발) ① 선정인원은 년 5명으로 하며 확보 재원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.

② 학과별 각 1명으로 하며 선정인원이 각 학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제21조에 따라 학교(학생과)로부터 2배수를 추천 받아 임원회에서 심의, 선발하여 학교에 통보한다.

제23조 (장학생 수여) ① 장학금은 총동창회장이 직접 수여한다.

② 장학금 수여시 장학증서도 함께 수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24조(附則 1) ① 본회는 명예회장과 자문위원회를 구성,운영하며 명예회장과 자문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1. 명예회장 : 현직 재단이사장

2. 자문위원장 : 현직 총장

② 자문위원은 현/구 교수 및 교직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.

제25조(附則 2) ①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당연 위촉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.

② 각 학과별 동문회장은 총동창회 당연이사로서 모든 동창회 업무에 참여하여야 한다.

제26조(附則 3) ① 본 회의 지역 및 직장 지부는 회원 10명이상이 가입하는 경우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부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 지부의 장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.

③ 회장은 확보재원에 따라 지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7조(附則 4) ① 본 회 회원의 사기진작과 질서유지를 위한 상벌을 할 수 있으며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.

제28조(附則 5) ①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

② 일반관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부서별 별도 내규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29조(附則 6) 이 회칙은 2003년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효력을 발생한다.

제30조(附則 7) ① 제10조 ①항 1호의 정기총회는 2006년부터 적용하며, 2005년에는 7월중으로 개최한다.

② 제20조 ①항의 회계연도는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는 2005년 6월30일로 마감 정리하여 2005년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하고 2005년 7월 1일 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는 2006년 정기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.

③ 동양공업고등전문학교, 동양공업전문학교, 동양공업전문대학으로 학제가 개편되면서 신설된 학과와의 기수 혼동을 정립하기 위하여 총동창회의 기수는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.

졸업연도	기 수	졸업연도	기 수	졸업연도	기 수	졸업연도	기 수
1970년2월	1	1979년	10	1988년	19	1997년	28
1971년	2	1980년	11	1989년	20	1998년	29
1972년	3	1981년	12	1990년	21	1999년	30
1973년	4	1982년	13	1991년	22	2000년	31
1974년	5	1983년	14	1992년	23	2001년	32
1975년	6	1984년	15	1993년	24	2002년	33
1976년	7	1985년	16	1994년	25	2003년	34
1977년	8	1986년	17	1995년	26	2004년	35
1978년	9	1987년	18	1996년	27	2005년	36

④ 본 회칙은 2005년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